

第42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1月14日(月) 10時43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94年度서울特別市鍾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4. '94年度市民行政委員會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3面
3. '94年度서울特別市鍾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鍾路區廳長 提出) 10面
4. '94年度市民行政委員會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市民行政委員長 提議) 20面

(10時43分 開議)

○委員長 羅在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약간 쌀쌀하고 스산한 날씨에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45일을 배당받아서 40일 동안 그야말로 많은 성과를 올린 임시회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남은 5일을 이번 기간에 쓰겠습니다. 마지막 임시회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아주 중요한 사항이 상정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제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案係長 林星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 10월 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 10월 31일 제출되어 '94년 11월 2일 회부되었으며, '9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94년 11월 9일 제출되어 '94년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정기회 기간 중에 심의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심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0時49分)

○委員長 羅在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總務局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洪起和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홍기화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진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羅在岩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종로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개정사유는 창신2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창신동 594번지 8호에서 창신동 583번지 3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의 별표 1의 창신2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집무환경 개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동청사 신축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4
----------	-----

제출년월일 : 1994.10.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우리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수행 능력제고를 위하여 창신2동청사를 신축이전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창신2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창신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창신동 594-8”에서 “창신동 583-3”로 개정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6조

4. 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표 종로구 창신2동사무소 소재지란 중 “창신동594-8”을 “창신동 583-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후			
구분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 관할	구분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 관할
종로구	창신2동	창신동 594-8	창신동 일부지역	종로구	창신2동	창신동 583-3	창신동 일부지역

○委員長 羅在岩 總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94년 10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창신2동청사가 '94년 7월

21일 준공됨에 따라서 조례상 동사무소 소재지 번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사무소 소재지는 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에서 그 위치와 지번을 별도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창신2동청사 건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창신동 583-3호 공사가

간은 '93년 9월부터 '94년 7월 21일까지, 대지는 422㎡ 건평은 지하 1층 지상3층 해서 781㎡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건축비가 4억2,000만원, 토지매입비가 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사무소설치조례 중 소재지 지번을 정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네. 金憲中委員! 토론하세요.

○金憲中委員 창신2동 594번지에서 584-3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는 제4조에 의해서 승인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장일치로 승인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삼청이 나왔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鍾路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0時53分)

○委員長 羅在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財務局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來昶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래창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재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관련 물품관리조례 개정 준칙이 94.10.4자로 시에서 우리 구에 시달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종로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4항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대상물품을 종전은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조정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용물품 매각코자 할 때는 취득 당시의 장부가격을 참고로 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데 취득가격이 저렴한 물품을 감정의뢰할 경우 감정수수료 부담과 처리에 시간을 지체하게 되고 협소한 사무실 환경을 저해하므로 1천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한정하여 감정의뢰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조례 제23조 소모품대장의 장책비치를 없애도록 삭제하고 별표 1 비품기준 취득단가를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물품관리에 대한 현실적 사안을 고려하여 개정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9
----------	-----

1. 개정사유

'94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각 시·도 공통 건의사항을 내무부가 수용하므로써 우리구의 물품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능률적인 물품관리로 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매물품당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함(동조례 제16조 4항).

나. 법정장부 축소—소모품대장(동조례 제23조)

다. 비품기준에 있어 취득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개정조례(안): 별첨

4. 관제법규

가.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4항(불용품의 매각)

나.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 제23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5.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4항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을 장부상취득가격이 1천만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5호를 삭제하고 6호를 5호로 한다.

【별표 1】의 품종구분 기준항중 ①비품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조례)

현행	개정
제16조(불용품의 매각)	제16조(불용품의 매각)
①~③(생략)	①~③(현행과 같음)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감정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
⑤~⑧(생략)	⑤~⑧(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 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부 3.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4. 물품카드 등록부 5. 소모품 대장 6. 도서대장 ②~④(생략)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1. 2. 3. 4. 5. 【삭제】 6. ②~④(현행과 같음)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물품의 분류(생략) ○품종구분 기준 (1) 비품 ①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 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가 5만원 이상의 물품. ③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생략) ○물품의 상태 분류기준(생략)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물품의 분류(현행과 같음) ○품종 구분 기준 (1) 비품 ①..... ②.....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2) 소모품(현행과 같음) ○물품의 상태 분류 기준(현행과 같음)

【별표 1】

○○시·도, 시·군·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칙

○○시·도, 시·군·구 물품관리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4항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으로 한
다.

제24조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품종구분 기준란중 (1)비품 ②

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
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委員長 羅在岩 李來昶 財務局長!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9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가 불용품의 매각시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만을 감정 후 처분대상으로 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과 두번째로는 지금까지 5만원 이상을 비품으로 관리하던 것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 세번째로 소모품에 대하여 현재는 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장을 비치하지 않도록 삭제하는 세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품관리조례에서 규정한 물품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이 되고 다시 비품은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은 업무용과 사무용으로 구분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품은 그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인 물품은 비품이라고 하고 또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이 되더라도 5만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규정하도록 관련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모품은 내용년수가 1년 미만에 의하여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소모품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매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으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3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관리는 관리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물품출납 공무원을 임명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품장부는 물품 수입 및 출고원장을 비롯해서 6가지가 지금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불용품의 매각은 불용품을 타기관에 필요한지 소요 조회 후에 소요기관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불용 결정을 한 연후에 매각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매각 결정을 한 불용품은 가격을 사정한 후에 매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가격 사정시에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 물품을 감정기관의 감정 후에 그 평가액을 매각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

각은 년2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첫번째 안, 취득가격을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는 '88년 5월 7일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물품가격이 상승됨으로써 감정 대상이 확대되어 과당 감정이 지불이 수반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안입니다. 소모품대장을 비치하는 것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과거 소모품의 부당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지만 현재는 공무원의식 수준이 제고되고 경제 수준이 향상되어서 필요가 없는 규정으로 생각되고 오히려 사무의 번잡성만 초래되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안입니다. 비품대상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물품 가격의 상승으로 관리대상만 많이 생기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개별 검토의견과 같이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문 이외에 종로구물품관리조례 중 제16조1항, 제17조1항, 제22조1항 서두 부분의 전조를 인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전조를 동일조로 인용하는 법규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검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네. 朴禹信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禹信委員 朴禹信입니다. 500만원 이상인 것을 한 번 감정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財務局長 李來昶 한 건당 5만6,000원으로 합니다.

○朴禹信委員 500만원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가격으로 보는데 그걸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건당 5만6,000원이면 뭐 크게 다를 거 있어요?

○財務局長 李來昶 당초에도 대개 500만원

정도면 증장비 및 차량에 한해서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부부에서도 당초는 500만원 이상 이렇고 저희는 이제까지는 가액의 구분없이 합해 가지고 이렇게 감정의뢰를 해왔었는데 이 사항이 지난번 종로매물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드러나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내부부에서 준칙으로 각 시, 도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朴禹信委員** 그리고 예를 들면 대우자동차 프린스를 샀다, 취득가격이 1,500만원인데 한 5년 타고 나니까 현시가로 본다면 한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인데 그런 걸 애기하는 거 아닙니까? 승용차는 얼마나 탐니까?

○**財務局長 李來昶** 승용차의 차종에 따라 다름니다마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禹信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네. 朴勸先委員! 질의하세요.

○**朴勸善委員** 朴勸善委員입니다. 財務局長님! 재물조사와 재고조사하고의 차이점, 정부가 액하고 매입원가와의 차이점, 그리고 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소모품대장을 삭제했을 때의 소모품 절약과 소모품 아껴쓰기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재물조사 즉 재고조사는 1년에 얼마나, 몇 회나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 가정 내 살림 아껴쓰는 마음 자세로 한다면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질 때 큰 독을 채우고도 남는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한 계에서 종이 한장씩만 줄이는 절약을 종로구 전체에서 한다면 큰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모품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來昶** 재물조사와 재고조사의 차이점은 재물조사는 지방재정법상 103조에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있고 재고조사의 경우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항목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어느 부서의 재고조사를 해라 하면 지시에 따라서 하고 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소모품대

장 장부책 비치를 삭제하는 사항은 아까 蔣昭秀 專門委員님도 참고사항으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소모품일 경우에 내구년한 1년 미만이라든가 취득가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사실 소액이고 미미합니다만 비치되는 장부가 여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삭제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모품이걸 삭제하나, 대장을 삭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의 절약의식의 효과면에서는 사실 연구과제로 검토를 해야겠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다른委員 질의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金憲中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憲中委員**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조문 이외에 종로구물품관리조례 중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의 서두부분은 전조를 인용하는 조문이나 아래와 같이 동일조문을 표시하는 잘못이 있어 이를 수정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전문위원의 수정동의안 이것을 타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16조 불용품의 매각에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 이렇게 했고 즉 「제16조제1항,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 이렇게 된 기타 등등은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행하고 수정동의안을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행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財務局長 李來昶** 金憲中委員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무국장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은 수정함이 옳습니다.

○**金憲中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丁昌熙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불용품 매각에 대한 것을 조정했을 경우 몇 개 품목 정도가 현행에서 감소가 되는지 그것을 우선 알고 싶습니다.

○**財務局長 李來昶** 丁昌熙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비나 자동차인 경우가 500만원 이상 이렇게 되고 그 이외에는 대형 컴퓨터는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두세 개 품목에 해당되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년2회에 매각한 금액이 80만원이고 불용품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위에서 일률적으로 개정을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상정한 안전입니다마는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크게 고치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은 고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상정이 이번에 된 겁니다.

○**丁昌熙委員** 사실상 감정료가 건당 5만6천원으로 일률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금액의 다과에는 관계없이 건당 5만6천원인데 그러니까 1개 품목당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몰아서 감정하는 것이 5만6천만원입니까?

○**財務局長 李來昶** 한 번 감정하는데 1회에 그렇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면 1년에 두 번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來昶** 금년에 저희가 두 번 매각했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면 두번이면 11만2천원이 지급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크게 금액의 다과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보는데 지금 불용품의 매각에 대해서 일정한 취득금액을 정해서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이후에 매각하도록 한 취지는 보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과 사실상의 물품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 금액을 산정해서 상향조정해야 될 이유가 크게 우리 구에서는 국장님이 보시는 취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李來昶** 丁昌熙委員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丁昌熙委員** 두번째로는 지금 우리 물품장비를 관리함에 있어서 수기방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디스켓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來昶** 저희가 디스켓에 입력해

서 하고 있습니다.

○**丁昌熙委員** 사실상 지금 장비를 대부분이 과거 종전의 수기방식에서 컴퓨터 디스켓 활용하는 방식으로 되었다고 하면 굉장히 행정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크게 번거로움이라든가 복잡한 것은 많이 해소가 되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으리라 보는데 굳이 여기서 지금 금액을 산정하거나 해서 소모품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을 상당 부분 행정에 번거로움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보십니까?

○**財務局長 李來昶** 소모품의 경우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丁昌熙委員** 소모품이라고 하면 1회용 소모품이 있고 또 상당한 기간을 재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물품이 소모성이 있는 소모품은 한 몇번에 걸쳐서 몰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회나 2회로 수명을 다하는, 또 그것을 챙기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과거 종전에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공무원 의식수준이 조금 낮은 입장에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망실이 많이 있었습니까마는 지금은 망실쪽보다는 관계공무원이 관리를 잘못하고 챙기지 않아서 부주의하고 소홀한 관리 측면에서 훼손되어서 없어져버리는, 누가 가져가서가 아니라 그냥 없어져서 쓰레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소모품관리대장이 존치를 계속 하는 것이 나으나, 또 관계공무원의 사용 부주의라든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쓰레기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과연 이것을 제도적으로 변화를 갖고 오는 게 나으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李來昶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중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金憲中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憲中委員 金憲中委員입니다. 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특히 2년마다 실시되는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발견’이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발견’된 데 대하여 관련 물품관리조례 개정 준칙이 '94년 10월 4일 부로 우리 구에 상위법이 하달되었다. 여기에 의하여 개정한다는 요지가 있는데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 개정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개정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판단이 있으므로 당연히 수정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 저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으로 토론에 임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본 위원장이 잠깐 金憲中委員의 토론 요지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 개정조례(안) 물품관리조례 중에 개정조례(안) 원안 주요골자 세 건 이외에 조문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의 서두부분을 金憲中委員님 말씀대로 제16조, 제17조, 제22조 서두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지금 토론 요지로 삼고 계시는 거지요?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朴禹信委員 토로하세요.

○朴禹信委員 朴禹信委員입니다. 취득가격에 500만원을 생각해볼 때 중장비나 컴퓨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취득가액이 내구년한 5, 6년이 지난다면 500만원이면 불과 몇십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소모품대장을 철폐하자 그런 얘기는 그냥 먼저대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직장ियो, 내가 쓰는 이러한 용지는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상당한 자기인식의 의식이 이렇게 된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더라도 혹여 잘못되면 그냥 중도과정에서

없어져 마구 팽개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또 기왕에 잘되는 것을 그것까지 폐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것은 존속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수정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는데 소모품대장 비치를 종전대로 하자는안을 朴禹信委員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저 위원장 생각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모품대장을 하나 갖고 와서 사실상 필요한지 아닌지 조사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丁昌熙委員 말씀하십시오.

○丁昌熙委員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한 연후에 다시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財務局長 李來稔 關係官席에서 — 토론 시간이라서 제가 답변을 올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제가 보충적으로 한말씀드리면 소모품은 당초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금액을 통제하고 있고 예산상에, 그래서 사실로 없애는 것은 업무량 감축 의미를 저희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경미하게 봐서 위에서부터 비치하지 않는 걸로 한 겁니다. 통제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일반운영비 가운데 소모품 구입비를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그러면 우리 丁昌熙委員님 말씀대로 토론요지처럼 소모품대장 한두 권을 참고로 우선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11時42分 繼續開議)

○委員長 羅在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金憲中委員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구두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朴勸先委員 말씀하세요.

○朴勸先委員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과 수정안을 비교해볼 때 불용품의 매각문제에서의 제15조 규정 적용이 타당함에도 그동안 제16조를 적용해왔고 불용품의 폐기 문제에 있어서도 제16조의 1항을 적용하는 게 타당함에도 제17조제1항을 사용해 왔으며 물품관리자의 변상책임도 제21조에 의거함이 타당한데 그동안 제22조를 적용해온 모순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소모품대장 문제는 종이, 볼펜, 사인펜 등의 1회용 소모품이기 때문에 대장을 폐지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가져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안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委員長 羅在岩 본 위원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 金憲中委員님이 구두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거기에 朴勸先委員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삼청이 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年度서울特別市鍾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鍾路區廳長 提出)

(11時46分)

○委員長 羅在岩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財務局長!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來昶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李來昶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羅在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94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사직동 어린이집과 창신1동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유재산 취득사항입니다.

본건은 그동안 지역 구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 동장의 조사활동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대상부지를 적극 검토한 바, 어린이집 설치에 적당한 부지로 선정하였으며, 가격 또한 인근지역에 비하여 저렴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소유자와 매매협의를 이루어져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지별로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직동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부지는 필운동 88-2호의 대지 452.9㎡ 137평 연와조건물 114.35㎡ 34평의 개인사유지 택옥자 재산으로 배화여자전문대학 동측 주택지역에 위치하여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과 근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며, 창신1동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부지는 창신1동 403-17, 18, 19호의 대지 244.3㎡ 74평, 연와조건물 3동 114.37㎡ 34평의 개인사유지 재산으로 동신교회 남동측에 위치하며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내에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써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매도자의 요구가격이 2개 감정기관의 평균평가액 이하로서 매도자와 협의된 가격인 필운동은 4억6,700만원 평당 340만원, 창신1동은 5억3,650만원 평당 725만원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입자 이전 등 제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고 재산을 명도할 것에 대해 매도자의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승인 요청한 재산취득건은 지역주민과 특히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교육에 애로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95년도에 어린이집을 신축, 국고 보조비 등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이들 가정의 자녀를 위탁 보육하여 지역의 저소득 주민과 맞벌이가정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돕

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점을 충분히 감안
하셔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복지증
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제
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94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314
----------	-----

제출년월일 : 1994.11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안사유

○복지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사직동 및
창신1동의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적정
부지를 매입하여 구민복지를 증진코자
함('95년도 신축)

2. 주요골자

○필운동 88-2(452.9㎡), 창신1동 403-
17외 2필지(244.3㎡)부지를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자와 협의 매입

3.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별첨

4. 관계법규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5.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94편성 예 산)

※부족예산은 타부서 사용잔액
활용

종로구청장이 1994.11. .승인요청한 '94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을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승인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계명 : 일반회계

'94년도 관리계획변경계획총괄표(6-1)

(단위 : m³, 천원)

[illegible]

'94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6-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의 포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주소·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1	대 지	필운동 88-2	452.9	467,000	4/4	어린이집 신축	종로구 필운동 88-2 탁옥자	
	건 물	필운동 88-2	114.35	(건물포함)	4/4			
2	대 지	창신1동	244.3	536,500	4/4	어린이집 신축	성북구 정릉3동 897 손옥봉	
	건 물	403-17.18.19 창신1동	114.37	(건물포함)	4/4			

(다음 「페이지」에 계속)

○委員長 羅在岩 李來昶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蔣昭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94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매입을 위한 관리계획변경 승인건으로 창신1동 어린이집 신축 부지와 사직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를 각각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한 현황은 1994년 2월 16일 원계획을 승인한 이후에 1994년 5월 20일 1차 계획안을 승인하였고 7월 13일자로 2차 계획안을 변경하였고 금번이 3차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예산은 기히 확보되어 있고 매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 계획 승인 이후에 지가감정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수반되는 등 년내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조속한 업무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 지역에도 이와 같은 건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서 가결까지 시킨 대지가 매입되지 않고 여기 말대로 지가감정과 개인재산이 서로 맞지 않아서 아직도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건을 참작하시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金憲中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憲中委員 3차에 걸쳐서까지 이월해서 불용액을 남겨가지고 하는데 우선 하나씩 하나씩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려고 했던 땅을 사지 못한 감정료는 누가 충당을 할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전문위원님도 애

기했고 또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치 대지를 금방 승인만 해주면 사는 양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데 확약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확약서를 여기 내보내세요. 어떻게 확약했는가, 어떻게 공증하고 그 감정 가격 이하에 매매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공증을 해가지고 제시해야 매수가 가능하지 이게 벌써 3차에 걸쳐서 자꾸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쓰고 남은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불용액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인데 우선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사려고 하다가 감정까지 해놓고 못 사는 그 감정료는 과연 담당계장이 책임을 질 것인가, 과장이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재무국장이 책임을 진다든가 이러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羅在岩 財務局長! 답변해 주세요.

○財務局長 李來昶 金憲中委員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요청안은 담당 소관국인 시민국에서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연후에 서면으로 재무국에 여기 상정할 것을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서 서류상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올리게 되겠습니다마는 감정료 관계라든가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설립 부지에 대한 매도자의 매도의사가 확실한지 여부,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쳤느냐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입요구 주관부서의 주관과장의 의견을 들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金憲中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金憲中委員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걸 검토를 안 해보시고 나오신 겁니까?

○財務局長 李來昶 검토를 철저히 했습니다.

○金憲中委員 그러면 시민국장을 불러 주세요. 시민국장을 불러서 그래도 권위있는 국장이 답변을 해야 이걸 승인해주지, 승인을

안 해주면 승인 안 해줬다고 하고 승인해서 3차까지 매입을 못 하고 있으면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모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변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한계가 없고 막연하게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히 감정가격을 팔구십만원 소모시켰다는 말이 있는데 물론 감사 때 제가 따지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이 있어야지 감정만 해놓고 돈은 다 써놓고 매입도 못 하고 공중도 안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가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구입을 못 하고서는 마치 의회에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양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우선 金憲中委員님이 질의하셨는데 재무국장께서 안 되면 시민국장이라도 나와서 질의에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財務局長 李來昶 지금 시민국장을 오라고 직원이 가는 시간 중에 우선 소관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李恩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국장님이 오시는 동안에 제가 담당과장으로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려면 우리가 그 몇억 예산을 들어서 사는 부지를 우선 감정을 해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건물주와 타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감정 의뢰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 의뢰는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건물주와의 화약은 제가 직접 건물주를 만나가지고 평당 725만원에 팔기로 저희가 각서를 받아왔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金憲中委員 먼저 감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판다면 먼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나무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다고 하지도 않은 남의 집을 살 수도 없는 집을 감정을 먼저 하

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판다고 하고 또 집을 비워준다고 해야 감정을 하는 것이지 감정을 먼저 하고 거꾸로 전도가 되는 거지요. 이 감정가격에 대해서 예산에서 소모시켰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감정료를, 이미 기히 헛된 감정료를 소모시킨 데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책임 한계를 묻고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료는 구 예산에서 무조건 소모시켰으니 도저히 이려고저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밖에는 안 되는데 그런 무책임한 대지 매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이 어째서 먼저입니까?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때 감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경험에 비추어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委員長 羅在岩 市民局長님 오셨는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 내용이 우리 金憲中委員께서 어린이집 매입시 매입의사 타진 전에 먼저 감정을 의뢰한 이유와 감정이 손실에 대한 의혹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吳炳漢 창신1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감정료를 지불했습니다. 감정을 하게 되는 절차는 우리 예산의 규모와 그 다음에 우리 토지매입상의 감정 2개 기관에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창신1동 어린이집 부지의 토지주도 매입을 희망하고 저희들도 걱정한 위치라고 봐서 감정을 의뢰했고 그 이후에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 부지가 되어서 사실상 다른 부지를 우리가 선정을 다시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그러한 분쟁이 없었더라면 감정료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그런 세입자 문제까지도 심도있게 고려를 해서 감정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하는 절차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憲中委員 아니요. 이것을 나는 어떠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런 토지 매수라든가 혹은 기타 국방부 모든 매수 등등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는데 이 책임 한계를 지금 따지고 그 감정료를 부당하게 소모시킨데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그 땅이 불필요하게 세수에서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실령 그런 것도 있다고 보지만 그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승인 안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책임 80만원인가 90만원 소모시켰다고 가정복지과장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시민국장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사지도 못하는, 이런 막연하게 하는 토지에 대해서 현재 어떤 것을 승인해 주시기에 앞서 여기에 엄청난 우리 구청의 세수를 소모시켰으니 부당하게 소모시킨 데 대한 책임을 누가 지며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변제를 할 것이냐, 그냥 우물우물해서는 안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책임을 지든지 책임 못 지겠으면 책임 못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놓고 다시 하려다가 다시 그러고 아까 복지과장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감정을 먼저 한다 이 말입니다. 살 수 있는 것은 동장과 주민 간의 타협 하에서 가능한 것은 어느 선까지 감정해 가지고 얼마 하겠다 하는 타협이 없이는 감정을 먼저 해가지고 우리 혈세를 소모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모시킨 감정료를 누가 책임을 지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변제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서는 차기 감사 때는 저는 이것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하나씩 따지겠습니다.

○市民局長 吳炳漢 市民局長이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할 때 A,B,C 세 물건의 토지가 되었을 때 물론 우리가 가장 걱정한 토지를 우선순위로 해서 1,2,3번을 매깁니다. 그러나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는 막연히 우리가 어떤 가격 내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는 세 건의 대상토지가 나오면 예산

에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세 건의 대상 물건을 감정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필요한 토지 하나를 감정평가를 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적정한 가격으로 사려는 우리 구청의 의지로 평가하지 크게 낭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憲中委員 참 답답하네요. 이미 소모시킨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구의원은 구청을 견제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미 헛되게 소모시킨 돈에 대해서는 동장이 책임이 있다든가 복지과장이 책임이 있다든가 과장이 책임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고서는 이것을 8,90만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이것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졌는데 그것이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말 상대가 안 되네요.

○市民局長 吳炳漢 市民局長이 말씀드리는데 저 개인이 땅을 사더라도 걱정한 가격을 자기 주관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걱정한 가격으로 땅을 구매했느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라고 하면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땅을 살 수 있는지 여부를 예산에 적정하게 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구입 못 했다 하더라도 감정료 지불에 대해서 낭비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憲中委員 이렇게 때문에 지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나는 그 말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금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데 그 땅을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 그것부터 확신을 가지고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왜 감정을 먼저 해놓고 사지 못하느냐, 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발생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 발생한 데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앞으로 사는 데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 할지라도 감정료가 들고 그 다음에는 또 감정료가 들고 3차에 대해서 지금 땅을 사겠다는 잉여금 갖고 사고 어떻게 해서 3차에 사겠다고 해

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심각히 생각해 봐야지 감정료 소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市民局長 吳炳漢** 시민국장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토지 매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강제수용하는 방법, 공공요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방법과 둘째 협의 매수입니다. 그런데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 의해서 토지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강제로 여기저기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없는 필지를 감정했다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金憲中委員** 이것은 공공시설이지만 절대로 어떠한 구청이라도 이것을 강제매수할 수는 없는 땅입니다. 최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왜 협의를 하지 않고서는...

○**市民局長 吳炳漢** 아닙니다. 협의를 한 것입니다. 협의매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토지소유주가 팔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둘째는 팔겠다는 가격과 세입자가...

○**金憲中委員** 아니죠. 그것을 빼놓으면 안되죠. 그 집이 어떠한 형태로 세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입자 하나하나를 전부 타진을 해 갖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 말입니다.

○**市民局長 吳炳漢** 맞습니다. 金憲中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둘째, 가장 큰 것이 가격입니다. 가격을 우리가 취득하는 재무과에서 하는 기준에 보면 감정이 이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산다면 감정이 이상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같은 협의매수지만 감정이 이하로 사기 때문에 가격을 평가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어떤 담보가 있으면, 세입자 간의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했으나 나중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취득을 못한 것이니까 걱정한 다음 토지가 있을 때는 또 다시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金憲中委員**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똑똑히 잘 들으세요. 첫째는 지금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委員長 羅在岩 市民局長님!** 지금 지난번 우리가 사겠다고 해서 승인 가결시켜준 자체에 대해서 金委員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새로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와 토론하는 시점인데 지금 지난번 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런 방안에서 정확히 재차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金憲中委員**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계속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생기고 보고가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동장한테 맡기지 말고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옥주를 제일 먼저 만나보고 그 다음에는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주위에서 여론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 집을 사는 데 대해서, 짓는 데 대해서 물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구의회가 행정부의 시너가 아닙니다. 전 하루를 하더라도 그런 방법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첫째, 이 땅이 살 수 있느냐 할 때 그 세입자하고 합의서를 붙여 가지고서 해도 그것은 부족합니다. 공증을 해가지고 구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야 구의회에서는 공증하더라도 재판하려면, 쫓아내려면 힘이 드는데 공증하게 되면 그것은 1심에서 판결한거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감정가격, 감정가격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공시지가라는 것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이내로 당신이 팔 수 있느냐 팔겠다는 승인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해 가지고 감정이 이하로 협의매수니까 팔겠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협의해서 붙여야지 그것이 완전히 매수할 수 있는 길이지 아무리 여기 좋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승인해준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못합니다.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고 자꾸 이

런 폐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의가 없고 의회는 맨날 방망이나 쳐서 승인이나 해주는 그런 절차만 밟게 되고 또 주민의 혈세를 그렇게 해 갖고 감정가격만 자꾸 없어지고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 먼저 것부터 책임지겠다는 말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金憲中委員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어야지 이런 것을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委員長 羅在岩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市民局長 吳炳漢 金委員長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나 저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성의있게 현장조사도 하고 토지 매도자를 직접 만나서 확인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같은 것은 미리 사전에 각서라든가 공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李萬魯委員! 질의하십시오.

(○金憲中委員 委員席에서 - 가만히 있어보세요. 여기 지금 로비까지 하겠다는 소리가 들어왔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창신동 건물입니다. 건물 및 대지를 종로구청과 매매시 세입자에 대한 모든 문제를 4월 중순까지, 내년도 4월입니다. 4월 중순까지 본인이 책임지고 이전하겠다는 서약합니다. 이것이 창신동 것인데 403-17,18,19 3필지, 이런 서류를 가지고서 부동산 매매각서 이래 가지고서 3필지인데 손옥봉씨 위 본인 소유 부동산을 종로구의 구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함에 있어 본인은 다음 금액으로 구에 매도할 것을 약속하며 차후 약속을 불이행하지 않겠기에, 이것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받고서 여태까지 섭섭한 말이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공시지가 이내로 혹은 감정가격 이내로 매도할 것

을 각서에 붙여야지.)

○委員長 羅在岩 됐습니다. 金委員長님! 지금 서류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습니까?

○金憲中委員 없어요. 전혀.

○委員長 羅在岩 서류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이 서류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할까요?

(○玄壽漢委員 委員席에서 - 내가 전화를 했는데 손옥봉씨 어저께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판데요.)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李萬魯委員! 질의하십시오.

○李萬魯委員 매매를 하고 안하고는 당사자인 복지과에서 일단 그 땅에 대한 확인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먼저 건에 대해서 1차 2차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땅 주인한테 확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앞으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매매를 못 한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할 자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家庭福祉課長 李恩淑 그 건물주를 제가 직접 만나봤거든요. 그 분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李萬魯委員 앞으로 먼저같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家庭福祉課長 李恩淑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李萬魯委員 지금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중개를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家庭福祉課長 李恩淑 직접합니다.

○李萬魯委員 그러면 복지과장이 확인을 했고 틀림없다 이것이지요? 만일 이것이 먼저같은 경우가 된다면 책임을 진다 이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李恩淑 예.

○李萬魯委員 그러면 우리는 승인을 해주는데 있어서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져야지 다른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대한 감정에 대한 것은 나중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이것 승인 해주느냐 마느냐 확실한 것은 본안전 승인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委員長 羅在岩 그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金憲中委員 委員席에서 —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태까지 지난번 뭐냐하면 1,000명 가까이 이쪽 저쪽에서 분쟁이 있어 가지고 의회만 골치아프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주었는데 사지 못하니까 나중에 가서 사지 못하는 것을 의회에다가 책임을 추궁해 가지고 현지까지 몇번씩 나가고 하니까 나중에 사지 못하고 비싸게 사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요.)

○委員長 羅在岩 金委員 말이죠. 그 충정을 충분히 시민행정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도 한 번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황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재상정된 안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너무 이 문제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잡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선 질의가 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財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朴勸先委員! 토론하십시오.

○朴勸先委員 제가 일찍이 말씀을 올리려고 하다가 저희 등에 대한 문제라서 또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이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실로 저희 등 어린이집 문제를 가지고 여러 議員들의 위상에 큰 손상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제가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죄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두번째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저도 확인을 했고 또 동네 주민의 여론도 들어봤고 채인 둘에 두 번 채여서 넘어져 가지고 또 의원들의 위상에 손상을 주지 않

기 위해서 다지고 다지고 다졌습니다. 이 점을 깊이 양지하셔서 꼭 매수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朴禹信委員! 토론하십시오.

○朴禹信委員 지금 朴勸先委員님의 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 물론 구의회 재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쓰자고 정책을 하시는 金憲中委員님의 말씀을 참 감명깊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린이집 부지 매입에 있어서 사실은 제도상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감정가에 의해서 현시가하고 가격 괴리가 있어서 우리 구유재산을 매입할 적에 엄청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 매입에 있어서 제 생각은 어렵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어린이집이 각 동네에 점점 많아져야 우리 사회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볼 적에 이 본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2개 사직동하고 창신1동 두 어린이집을 하루속히 매입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金憲中委員! 말씀하십시오.

○金憲中委員 본인도 이런 면에서는 동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주고 사면 돈이라도 달라는 대로 많이 주고 사고 감정가도 때에 따라서는 내가 알기로는 올릴 수도 있고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하간 이 감정을 한다면 하는 선행보다도 통과를 시켜주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에 어떠하게 나오더라도 그 가격에 의해서 매도하겠다는 그런 작서를 공증해서 첨부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또 구의회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서류를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써 뭐냐하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 이하로서 매수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 이것을 토론에 임합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玄壽漢委員! 토론하십시오.

○玄壽漢委員 필운동, 사직동하고 창신1동 두 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鄭命浩議員도 아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필운동 팔기로, 그쪽 지역을 봐가지고 평당 340만원이면 썬 쪽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이 창신1동 가격은 그쪽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옥봉 씨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어제 전화를 했더니 팔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장님은 우리가 승인해주면 즉시 가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질없도록 하시라고.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삼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委員長 羅在岩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삼청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9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금 본안 외에 金憲中委員님의 조건부 승인에 개이가 들어왔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時27分 舉手 表決)

내려 주십시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이 1명 가결이 6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으로 가기 전에 본 委員長이 시간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한 건 남았는데,

(「그냥 합시다」하는 이 많음)

좋습니다.

財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市民行政委員會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市民行政委員長 提議)

(12時30分)

○委員長 羅在岩 의사일정 제4항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항, 제17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안을 확정하고 '94년 11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 실시 3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委員長과 幹事가 협의 작성해서 기배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우선 丁昌熙委員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丁昌熙委員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종로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의 활동과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 12월 4일만 휴회하고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정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3실하고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종로구보건소 및 각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은 羅在岩 委員長으로 하고 간사는 丁昌熙委員, 감사위원은 千相旭委員, 玄壽漢委員, 李萬魯委員, 鄭鍾九委員, 朴禹信委員, 朴勸先委員, 林臥龍委員, 金憲中委員, 孫光一委員 11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감사 일지와 감사대상기관, 감사 장소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현안 보고청취 및 질의와 답변, 현지확인 또는 보충서류의 제출 및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開會 및 委員長 인사, 의사일정 상정, 소관별, 국별 간부 소개

및 선서, 업무의 현황 청취 보고 및 질의 답변, 현지 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요구는 보고 요구로써, 보고사항은 실,국별 현황을 요구하며 보고 일시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 12월 5일 감사일정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11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사항은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에는 千相旭委員, 田永泰委員, 부암동, 평창동에는 孫光一委員, 李憲九委員, 삼청동, 세종로동에는 林臥龍委員, 洪承台委員, 무악동, 교남동에는 羅在岩委員, 鄭命浩委員, 가회동, 종로1,2가동에는 玄壽漢委員, 玄孝善委員, 종로3,4가동, 종로5,6가동에는 朴禹信委員, 朴鍾植委員, 이화동, 혜화동에는 朴勸先委員, 李炯述委員, 명륜3가, 창신1동에는 金憲中委員, 沈載得委員, 창신2,3동에는 鄭鍾九委員, 金成贊委員, 숭인1,2동에는 丁昌熙委員, 李萬魯委員이 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1. 監査의 目的

- 종로구청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19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 유도

2. 監査期間

1994.11.28-12.3, 12.5(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민국
- 종로구 보건소
- 각 동사무소(21개 동)

4. 監査班 編成

- 위원장: 나재암
- 간사: 정창희
- 감사위원: 천상옥, 현수환, 이만로, 정종구, 박우신, 박권선, 임와룡, 김현중, 손광일

5. 監査日程 및 場所

감사일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994.11.28~11.29	각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	현장 확인
1994. 11. 30	문화공보실 감 사 실 시민봉사실 보 건 소	종 로 구 청	
1994. 12. 1	총 무 국	종 로 구 청	
1994. 12. 2	시 민 국	종 로 구 청	
1994. 12. 5	재 무 국	종 로 구 청	
1994. 12. 3	구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회의실	

6. 監査方法

가. 감사방법

-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 현지확인 또는 보고, 서류의 제출 및 관계인의 출석증언

나. 주요 감사내용

- 1994년도 소관별 주요시책 및 예산집행 사항
- 문화행사·문화재관리사항 및 자체감사 활동 사항
- 각종 민원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과 동행정지도 관련사항
- 국민운동지원,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과 비상업무 추진사항
- 1994년도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각종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 업무추진, 부동산중개업의 지도감독사항
- 저소득시민의 보호 및 가정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항
- 위생업소의 지도단속 및 상공, 연료, 물가와 환경에 관한 사항
- 쓰레기 및 분뇨의 처리 및 대행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1994년도 방역사업 등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동사무소 주민등록관리 및 민원처리사항

다. 감사진행순서

- 개회선포 및 위원장 인사
- 의사일정 상정
- 소관실,국별 간부소개 및 선서
- 업무현황 청취
- 보고 및 질의 답변
- 현지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 청취
-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자료 및 관계인의 출석요구

- 보고 요구
 - 보고사항: 실,국별 업무현황
 - 보고일시: 1994.11.28-12.3, 12.5 (감사일정 참조)
 - 보고장소: 감사장
- 서류(자료)제출요구
 - 서류(자료)제출 요구사항: 별도 목록에 의함
 - 제출일시: 1994.11.25.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사무국
 - 제출부수: 20부
- 현지확인 사항
 - 현지확인장소: 각 동사무소
 - 현지확인일시: 1994.11.28~11.29.
 - 현지확인반 편성

동사무소	확인반편성	비 고	동사무소	확인반편성	비 고
청운동	의원		종로3,4가	의원	
효자동			종로5,6가	의원	
사직동	의원		이화동	의원	
삼청동	의원		혜화동		
부암동	의원		명륜3가동	의원	
평창동			창신 1동	의원	
무악동	의원		창신 2동		
교남동			창신 3동		
세종로동	의원		숭인 1동	의원	
가회동	의원		숭인 2동		
종로1,2가	의원				

—현지확인사항: 구청업무관련사항 및
주민등록관리와 민원처
리실태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출석일시: 1994.11.28-12.2, 12.5(감사
일정 참조)

—출석공무원: 소관 국장 및 실,과장

—출석장소: 감사장

7. 監査의 限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 금지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
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감사에 따른 취득사항 누설 금지

8. 行政事項

가. 보고·서류의 제출 요구

○보고·서류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
확정 후 각 감사위원의 요구사항을 위
원장과 간사가 협의 정리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위원장과 의결을 거친 보고·서류의
제출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종로구청
장에게 제출요구(늦어도 3일 전까지 도
달되도록 송부)

나. 현지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요구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 해당일
의 3일 전까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
에게 도달되도록 통지

○종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서울특
별시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에 의함

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
의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확정

○감사보고서의 주요내용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감사반,대상기관별 일
시·장소·방법 등 기타)

—주요 감사실시내용(소관별,사항별)

—감사결과 처리의견: 시정요구사항,처리
요구사항,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

—중요 근거서류

○委員長 羅在岩 丁昌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
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포결하겠습니다. 委員長과 幹事が 협의 작
성한 시민행정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제
획서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2
회 종로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는 散會하고 심사보고서는 委員長과 幹事が
협의해서 작성 議長에게 보고하겠습니다. 散
會를 선포합니다.

(12時40分 散會)

○出席委員 7名

羅 在 岩	丁 昌 熙	玄 壽 漢
李 萬 魯	朴 禹 信	朴 勸 先
金 憲 中		

○關係公務員

總 務 局 長	洪 起 和
財 務 局 長	李 來 昶
市 民 局 長	吳 炳 漢
家 庭 福 祉 課 長	李 恩 淑

○出席專門委員

蔣 昭 秀

